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
(공동체지원국)

목 차

< 일 반 회 계 >

○ 공동체정책과	3
○ 사회적경제과	31
○ 청년정책과	51

〈 일반회계 〉

공동체정책과

공동체 정책 과

1.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 6
2.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8
3.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10
4.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 12
5. 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기능보강 14
6. 충남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실태조사 16
7.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18
8.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20
9.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22
10.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성립전) ... 24
11.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지원(성립전) ... 26
12. 실패박람회 국고보조금 반납금 28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세부사업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청년의 창의성·적극성·재능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보령시 웅천읍(곰내 줌마야제 희망키움센터), 예산군 예산읍(해봄센터)
- 사업 기간 : '21. 06. 01 ~ '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5,000천원 【기정액 : 0천원 + 증 : 25,000천원】**
- ※ 증감 사유 :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2021.3.3.)에 따른 국비보조금 편성
- 사 업 량 : 지역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 프로그램 지원(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예산군
- 사업 내용 : 프로그램 기획·운영, 교육, 홍보, 행사 추진 등 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29조 1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29조(청년시설)

- ① 도지사는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사용하는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미편성 (변경) ■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 50,000천원(국비 25,000, 시군비 25,000) ○ 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령시 : 25,000천원(국비 12,500, 시군비 12,500) - 예산군 : 25,000천원(국비 12,500, 시군비 12,500) ※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 지원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	-	50,000	50,000	-	신규
국 비	25,000	-	-	25,000	25,000	-	
도 비	-	-	-	-	-	-	
시군비	25,000	-	-	25,000	25,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공동체혁신팀	홍은아 (행) 2270	유호열 (행) 3421	최용민 (행) 3471

소통협력공간 조성

소통협력공간 조성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세부사업	소통협력공간 조성
	통 계 목	민간위탁금(307-05)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연구용역비(207-01)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력 제고
- 사업 위치 :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2길 22)
- 사업 기간 : 2020.1.1.~2022.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857,500천원** 【**기정액 : 2,277,500천원 + 증 : 580,000천원**】
- ※ 증감 사유 : 실시설계비(320,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260,000천원) 계상
- 사 업 량 : 소통협력 거점공간 조성(도시관리계획 변경, 건물 구조안전 진단, 건축물 용도 변경, 실시설계, 리모델링 등), 사회혁신센터 운영(사회문제해결실험 리빙랩 홍보, 네트워킹, 컨퍼런스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공간조성) 및 민간위탁(사회혁신센터-혁신활동지원)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공간조성), ㈜로모, 천안 YMCA
- 사업 내용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활동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2,277,500천원 ○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307-05) 2,000,000(국비) ○ 소통협력공간 조성 시설비(401-01) 150,000(도비)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207-01) 127,500(도비)	
	(변경) ■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2,857,500천원 ○ (추가) 시설비(401-01) 320,000(도비) - 소통협력공간 조성 실시설계비 ○ (추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260,000(도비) - 친환경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위한 제작장비 구입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000,000	2,000,000	2,277,500	2,857,500	580,000	8,142,500	계속
국 비	6,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	2,000,000	
도 비	7,000,000	-	277,500	857,500	580,000	6,142,500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46%, 도비 5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000,000	1,610,842	-	81%	389,15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2020.9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공동체혁신팀	홍은아 (행) 2270	유호열 (행) 3421	최병철 (행) 3473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새마을회원에게 소속감을 부여하여 사기 진작
- 사업 위치 : 서산시
- 사업 기간 : '21.7.~'21.8.(신규사업)
- 예 산 액 : **15,000천원 【기정액 : 0천원 + 증 : 15,000천원】**
- 사 업 량 : 새마을 조끼 800장, 새마을 점퍼 800장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
- 사업 내용 : 서산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 활동복 지원
- 지원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1항 및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미편성 (변경) ■ 서산시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 30,000천원 ○ 새마을 점퍼(춘추복) : 20,800 · 26,000원 × 800장 = 20,800,000원 ○ 새마을 조끼 : 9,200 · 11,500원 × 800장 = 9,2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	-	30,000	30,000	-	신규
국 비	-	-	-	-	-	-	-
도 비	15,000	-	-	15,000	15,000	-	-
시군비	15,000	-	-	15,000	15,000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홍은아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확산
- 사업 위치 : 홍성군
- 사업 기간 : '21.7.~'21.12.(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 【기정액 : 0천원 + 증 : 10,000천원】**
- 사 업 량 : 사랑의 집고쳐주기 10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
- 사업 내용 : 홍성군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랑의 집고쳐주기 봉사활동 지원
- 지원근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미편성 (변경) ■ 홍성군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 : 20,000천원 ○ 사랑의 집고쳐주기 : 20,000천원 · 2,000천원×10가구 = 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	-	-	20,000	2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0,000	-	-	10,000	10,000	-	
시군비	10,000	-	-	10,000	1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홍은아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기능보강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민간단체 지원
	세부사업	자유총연맹 단체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유총연맹 단체 육성을 통한 올바른 안보관·통일관 확립
- 사업 위치 : 공주시
- 사업 기간 : '21.7.~'21.12.(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 【기정액 : 0천원 + 증 : 50,000천원】**
- 사 업 량 : 1식(냉난방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자유총연맹 체험관·전시실·교육관 냉난방기 교체 등 기능보강
- 지원 근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미편성 (변경) ■ 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기능보강 : 100,000천원(도비 50,000, 시비 50,000) ○ 냉난방기 교체 : 100,000천원 · 자재비 48,000천원 × 1식 = 48,000천원 · 노무비 14,000천원 × 1식 = 14,000천원 · 부가세 6,000천원 × 1식 = 6,000천원 · 전기공사 32,000천원 × 1식 = 3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	-	100,000	100,000	-	신규
국 비	-	-	-	-	-	-	-
도 비	50,000	-	-	50,000	50,000	-	-
시군비	50,000	-	-	50,000	50,000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홍은아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오은섭 (행) 2273

충남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실태조사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	도 자원봉사센터 육성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자원봉사 활성화 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활성화 방안 도출
- 사업 위치 :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 사업 기간 : '21.7.~'21.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 【기정액 : 0천원 + 증 : 10,000천원】**
- 사 업 량 : 조사분석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시행
- 사업시행주체 :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 사업 내용 : 충남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조사분석 추진
- 지원근거 :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9조,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p>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p> <p>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충청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센터의 지원)</p> <p>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초) 미편성 (변경)</p> <p>■ 충남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조사분석 : 10,000천원</p> <p>○ 인 건 비 : 6,557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연구원 : 3,245,879원 × 2 × 15% × 1명 × 4월 = 3,895천원 · 연구보조원 : 1,663,743원 × 2 × 20% × 1명 × 4월 = 2,662천원 <p>○ 직접 경비 : 2,536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여비 : 50,000원 × 2명 × 8회 = 800천원 · 통계분석비 : 80,000원 × 1식 × 4월 = 320천원 · 심층인터뷰 : 50,000원 × 1시간 × 15명 = 750천원 · 성과품인쇄 : 100원 × 30부 × 150면 = 450천원 · 설문 인쇄 : 30원 × 100부 × 12면 = 36천원 · 기타 인쇄 : 30원 × 20부 × 300면 = 180천원 <p>○ 부가가치세 : 909천원(총 경비의 10%)</p>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	-	-	10,000	1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0,000	-	-	10,000	1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21년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새마을지원팀	홍은아 (행) 2270	권경선 (행) 3422	유창재 (행) 3476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공익활동 활성화
	세부사업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익적 시민활동의 촉진과 확산,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및 인재육성 등
- 사업 위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충남 내포혁신플랫폼 내)
- 사업 기간 : 2021. 1. 1.~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05,000천원 【기정액 : 849,000천원 + 증 : 56,000천원】**
- ※ 증감 사유 :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내 협치 프로그램 확대·운영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추가
- 사 업 량 : 공익활동지원센터 및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프로그램 운영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공익활동지원센터)
- 사업시행주체 : (사)충남시민재단
- 사업 내용 : 공익활동사업 지원, 실무역량강화 및 시민교육사업 지원, 공익활동 공간 제공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4조, 제15조

<p>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설치)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 자”라 한다)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및 정산)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초) ■ 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 : 849,000천원 ○ 성장과 교육 : 154,882천원, ○ 활동 지원 : 199,800천원 ○ 공익문화 확산 : 58,200천원, ○ 운영비 : 106,781천원 ○ 인건비(6명) : 329,337천원 · 기본급 227,497천원, 제수당 71,780천원, 퇴직총당금 30,060천원</p> <p>(변경) ■ 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 : 905,000천원 ○ 성장과 교육 : 154,882천원, ○ 활동 지원 : 199,800천원 ○ 공익문화 확산 : 58,200천원, ○ 운영비 : 106,781천원 ○ 인건비(8명) : 385,337천원 · 기본급 262,539천원, 제수당 92,738천원, 퇴직총당금 30,060천원</p>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05,000	-	849,000	905,000	56,000	-	계속
국 비	-	-	-	-	-	-	-
도 비	905,000	-	849,000	905,000	56,000	-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849,000	837,660	11,340	98.7%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홍은아 (행) 2270	김미화 (행) 3424	한유정 (행) 3480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정책사업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단위사업	공익활동 활성화
	세부사업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원과 ‘사회적 가치’활동 경험 기회 확대
- 사업 기간 : 2021. 1. 1.~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69,348천원** 【**기정액 : 266,710천원 + 증 : 2,638천원**】
- ※ 증감 사유 : 국비 확정 교부에 따른 도비 부족액 증액
- 사 업 량 : 청년 18명 선발 배치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공익활동지원센터)
- 사업시행주체 : (사)충남시민재단
- 사업 내용 : 청년-공익단체간 1:1 매칭을 통해 공익활동 현장경험 및 공동학습 운영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p>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5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제12조(설치)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14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15조(지원 및 정산)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 285,748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164,000천원 청년공익활동가 (13명×2개월)+(3명×12개월)+(2명×10개월) × 2,000천원 =164,000천원 ○ 교육비 등 7,848천원 청년공익활동가 7,848천원 (13명×2개월)+(3명×12개월)+(2명×10개월) ○ 인센티브 97,500천원 · 청년공익활동가 13명 × 10,000천원 × 3/4분기 = 97,500천원 ○ 기업부담금 16,4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85,748	-	281,900	285,748	3,848	-	계속
국 비	142,874	-	140,950	142,874	1,924	-	
도 비	126,474	-	125,760	126,474	714	-	
시군비	-	-	-	-	-	-	
기 타	16,400	-	15,190	16,400	1,210	-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44%, 자부담 6%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84,000	384,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홍은아 (행) 2270	김미화 (행) 3424	한유정 (행) 3480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정책사업	주민자치 선도모델 구현
	단위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선도모델 구현
	세부사업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주민편의·복리 증진
- 사업 위치 : 천안시, 부여군
- 사업 기간 : 2021년 연내(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95,000천원** 【기정액 : 0천원 + 증 : 95,000천원】
 - ※ 증감 사유 : 건물 노후화에 따른 이용환경 개선 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물품구입을 통한 운영 활성화 등
- 사 업 량 :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집기류 등 구입 4식(천안시 2, 부여군 2)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부여군
- 사업 내용 :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건물 방수, 바닥 공사 등) 및 프로그램 운영 집기류 구입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5조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지원)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6.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미편성 (변경) ■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250,000천원) ○ 성정1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리모델링(50,000천원) (도비 25,000, 시군비 25,000) · 리모델링 공사비 : 35,000천원 · 별관 활용 자산 취득비(책상, 의자, 컴퓨터 등) : 15,000천원 ○ 수신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120,000천원) (도비 30,000, 시군비 90,000)) · 건축공사 : 100,000천원 · 전기공사 : 20,000천원 ○ 양화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40,000천원) (도비 20,000, 시군비 20,000) · 센터 리모델링 및 방음시설 설치 등 : 35,000천원 · 물품구입(음향기기 등) : 5,000천원 ○ 홍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40,000천원) (도비 20,000, 시군비 20,000) · 주민자치센터 내 집기류(파쇄기, 노트북, 청소기 등) 구입 : 4,500천원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헬스기구 등) : 35,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50,000	-	-	250,000	25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95,000	-	-	95,000	95,000	-	
시군비	155,000	-	-	155,000	155,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성정1동·양화면·홍산면(도비 50%, 시군비 50%), 수신면(도비 25% 시군비 7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홍은아 (행) 2270	최정태 (행) 3423	이다희 (행) 2274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성립전)	정책사업	주민자치 선도모델 구현
	단위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선도모델 구현
	세부사업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들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민 편의 제고
- 사업 위치 : 공주시, 당진시, 서천군
- 사업 기간 : 21. 1. ~ 21.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 【기정액 : 50,000천원 + 증 : 50,000천원】**
- ※ 증감 사유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2021.2.25.)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사 업 량 : 3개소(공주, 당진, 서천) - 공모사업 선정 시군별 사업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당진시, 서천군
- 사업 내용 : 주민총회 강화 및 주민자치회 제공 공공서비스 발굴,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및 안전망 구축 등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추진(20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시) 우리마을 복지체계 구축 “그까잇거 우덜찌리 해결해유” 100,000천원(국비 50,000 시군비 50,000) - (공주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자치리빙랩’ 50,000천원(국비 25,000 시군비 25,000) - (서천군) 장항읍 마을실행법인 활성화를 위한 역할 및 기능 강화 50,000천원(국비 25,000 시군비 2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	100,000	200,000	100,000	-	계속
국 비	100,000	-	50,000	100,000	50,000	-	
도 비	-	-	-	-	-	-	
시군비	100,000	-	50,000	100,000	5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50,000	15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홍은아 (행) 2270	최정태 (행) 3423	이다희 (행) 2274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주민자치 선도모델 구현
	단위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선도모델 구현
	세부사업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의 부처간 사업 연계 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다부처 정책 연계 추진 기반 마련
- 사업 위치 : 당진시, 홍성군
- 사업 기간 : 2021.1.~2021.12..(단년도 계속사업) ※ 22년도 예산심의 후 차년도 연계지원 추진(최대 3년)
- 예 산 액 : **150,000천원 【기정액 : 0천원 + 증 : 150,000천원】**
- ※ 증감 사유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사 업 량 : 2개소(당진, 홍성) - 공모사업 선정 시군별 사업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 홍성군
- 사업 내용 : 지역의 다양한 수요 발굴 및 다부처 연계사업 추진 지원 체계 구축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미편성 (변경) ■ (행정안전부)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지원」 사업 추진(300,000천원) - (당진시) 정책을 연계하는 ‘다부처 다붙여, 지역 주민 다붙여’ 180,000천원(국비 90,000 시군비 90,000) - (홍성군) 주민자치 기반 정책협업 읍·면 혁신 리빙랩 조성 120,000천원(국비 60,000 시군비 6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	-	300,000	300,000	-	신규
국 비	150,000	-	-	150,000	150,000	-	
도 비	-	-	-	-	-	-	
시군비	150,000	-	-	150,000	15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홍은아 (행) 2270	최정태 (행) 3423	이순옥 (행) 3477

실패박람회 국고보조금 반납금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공동체정책과)
	세부사업	이자상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고보조금 반환금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5. ~ 12.
- 예 산 액 : **455천원 【기정액 : 0천원 + 증 : 455천원】**
-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미집행 잔액(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836호)
- 사 업 량 : 실패박람회 국고보조금 반납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고보조금 반환금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미편성 (변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패박람회 국고보조금 반납금 : 45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55	-	-	455	455	-	신규
국 비	-	-	-	-	-	-	-
도 비	455	-	-	455	455	-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공동체혁신팀	홍은아 (행) 2270	유호열 (행) 3421	김영관 (행) 2272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

1.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성립전) 34
2. 계약학과 지원 36
3.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9
4. 사회적기업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아산시)(성립전) ... 42
5. 재정지원사업 수행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등... 44
6.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청년일자리) 46
7.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청년일자리) ... 48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성립전)	정책사업	지역경제 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사업간, 민관간 연계와 협업을 위한 협업체계 활성화
- 사업 위치 : 천안시, 아산시, 청양군
- 사업 기간 : 2021. 4. ~ 2021.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 【기정액 : 0천원 + 증 : 150,000천원】**
- ※ 증감 사유 : 행안부 공모('21.1월) 및 사업자 최종선정('21.4월)
- 사 업 량 : 3개 시군(천안시, 아산시, 청양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아산시, 청양군
- 사업 내용 : 협의기구(사회적경제위원회 등)에서 사업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한 판로·금융·교육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지원
- 지원근거 :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12조(재정지원)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12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미편성 (변경) ■ 사업명 :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 300,000천원 ○ 3개 시군(천안시, 아산시, 청양군) × 100,000천원 = 3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	-	300,000	300,000	-	신규
국 비	150,000	-	-	150,000	150,000	-	
도 비	-	-	-	-	-	-	
시군비	150,000	-	-	150,000	15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이민희 (행) 2280	이경찬 (행) 3941	이찬원 (행) 3972

계약학과 지원	정책사업	지역경제 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맞춤형 인재 양성과 종사자 역량 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1,580천원 【기정액 : 96,800천원 + 감 : 45,220천원】**
- ※ 증감 사유 : 학과개설 최소인원 15명 이하로 '21년 1학년 과정 미개설
- 사 업 량 : 사회적경제 계약학과 1식
- 사업시행방법 : 도내대학 연계 추진
- 사업시행주체 :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 내용 : 도내 대학교에 계약학과(사회적경제학과) 설치를 통해 맞춤형 인재 양성
- 지원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계약학과 지원 : 96,800천원 ○ 학생 등록금 79,800천원 · 1학년 등록금(신입생) : 1,330천원 × 15명 × 2학기 = 39,900천원 · 2학년 등록금(재학생) : 1,330천원 × 15명 × 2학기 = 39,900천원 (등록금 2,390천원 / 도비부담분 55.6%, 학생부담 44.4%)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17,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비(학생모집홍보물품, 모집요강 등 제작비) : 2,000천원 · 유인물비(과목별 수업자료 복사비, 사업 결과보고서 제본비 등) : 1,000천원 · 회의비(교육과정위원회) : 100천원*3명*4회 = 1,200천원 · 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지원비(3개팀 구성운영, 멘토비, 회의비등 지원) : 1,500천원 · 학생 오리엔테이션 2회(1, 2학기 개시 전) : 2,050천원 · 학생모집 홍보(산업체 방문) 및 기타 출장 : 25회*50천원 = 1,250천원 · 선진업체 견학 등 : 2회*1,000천원 = 2,000천원 · 학기 종료 후 학생만족도, 학업성취도 조사 : 2,500천원 ·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 × 1회(년 1회 결과보고) : 1,000천원 · 학생안전보험가입 보험료, 저작권료, 프린터토너, 복사용지 등 : 2,500천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학과 지원 : 51,58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등록금 : 34,58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년 등록금(재학생) : 1,330천원 × 13명 × 2학기 = 34,580천원 (등록금 2,390천원 / 도비부담분 55.6%, 학생부담 44.4%) ○ 교육비 : 17,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과목별 수업자료 복사비, 사업 결과보고서 제본비 등) = 1,000천원 · 회의비(교육과정위원회) = 100천원*3명*6회 = 1,800천원 · 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지원비 (3개팀 구성운영, 멘토비, 회의비등 지원) = 1,500천원 · 학생 오리엔테이션 2회(1, 2학기 개시 전), 학생행사비, 졸업식 등 = 2,950천원 · 산업체 방문 및 기타 출장 : 25회*50천원 = 1,250천원 · 선진업체 견학 등 : 2회*1,000천원 = 2,000천원 · 학기 종료 후 학생만족도, 학업성취도 조사 : 2,500천원 ·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 × 1회(년 1회 결과보고) = 1,500천원 · 학생안전보험가입 보험료, 저작권료, 복사기 임대료, 프린터토너, 복사용지 등 = 2,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1,580	-	96,800	51,580	△45,220	-	계속
국 비	-	-	-	-	-	-	-
도 비	51,580	-	96,800	51,580	△45,220	-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4,900	53,946	954	98.2%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이만희 (행) 2280	이경찬 (행) 3941	조민정 (행) 228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일자리창출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680,600천원** 【**기정액 : 3,778,500천원 + 감 : 97,900천원**】
- ※ 증감 사유 : 고용노동부 예산 확정내시 변경(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1013 / '21.3.25)
- 사 업 량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시행방법 : 참여기업 공모 및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일반(전문)인력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제1항, 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초)</p> <p>■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4,580,0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력 인건비 : 3,471,2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7명 x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2,003,910원 x 12개월 x 70% = 3,471,200천원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월 209시간×8,720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9.955) ※ 단가기준 :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비율(70%) 적용 ○ 전문인력 인건비 : 1,108,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6명 x 2,000천원 x 12개월 x 70% = 1,108,800천원 * 단가기준 : 전문인력 지원금 (2,000천원~2,500천원) 및 자부담을 제외(10%~50%) <p>※ 4대 보험 1인당 월 181,43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시급적용 8,720원 x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x 4대보험 요율 적용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 2020년 4대 보험 요율 9.955(고용 1.05%, 산재 0.73%, 건강 3.675%, 국민연금 4.5%) (변경)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4,461,000천원 ○ 일반인력 인건비 : 3,424,000천원 · 203명 x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2,006,070원 x 12개월 x 70% ≙ 3,424,000천원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월 209시간×8,720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10.075) ※ 단가기준 :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비율(70%) 적용 ○ 전문인력 인건비 : 1,037,000천원 · 61명 x 2,000천원 x 12개월 x 70% ≙ 1,037,000천원 * 단가기준 : 전문인력 지원금 (2,000천원~2,500천원) 및 자부담을 제외(10%~50%) ※ 4대 보험 1인당 월 183,590원 - 2021년 시급적용 8,720원 x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x 4대보험 요율 적용 ※ 2020년 4대 보험 요율 10.075(고용 1.05%, 산재 0.7%, 건강 3.825%, 국민연금 4.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461,000	-	4,580,000	4,461,000	△119,000	-	계속
국 비	3,346,000	-	3,435,000	3,346,000	△89,000	-	균특
도 비	334,600	-	343,500	334,600	△8,900	-	
시군비	780,400	-	801,500	780,400	△21,1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75%, 도비 7.5%, 시군비 17.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909,400	3,503,012	406,388	9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민희 (행) 2280	서정범 (행) 3942	차회정 (행) 3973

사회적기업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아산시)(성립전)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광역특화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기반이 열악한 사회적경제조직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을 위한 모델 발굴
- 사업 위치 :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 【기정액 : 0천원 + 증 : 100,000천원】**
- ※ 증감 사유 : 고용노동부 예산 확정내시(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1013 / '21.3.25)
-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 인센티브(아산시-최우수상)
- 사 업 량 : 아산시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개발 및 판로개척
- 지원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제1항, 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미편성 (변경) ■ 사회적기업육성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 143,000천원(국비 100,000 시군비 43,000) ○ 고용노동부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아산시) * 20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업무지침 준용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43,000	-	-	143,000	143,000	-	신규
국 비	100,000	-	-	100,000	100,000	-	
도 비	-	-	-	-	-	-	
시군비	43,000	-	-	43,000	43,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70%, 시군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만희 (행) 2280	서정범 (행) 3942	신광호 (행) 3975

재정지원사업 수행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정책사업	지역경제 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기반이 열악한 사회적경제조직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을 위한 모델 발굴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7,000천원** 【기정액 : 27,000천원 + 증 : 20,000천원】
- ※ 증감 사유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수행기업 선정 심사자료 및 수당 등
- 사 업 량 : 재정지원사업 공모 7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선정 등 심사위원회 개최 연 7회
- 지원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제1항, 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 출 기 초	(당초)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수행기업 선정 : 27,000천원 ○ 사업설명회(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역특화사업) 연 2회 × 89부 × 15,000원 ≒ 2,680천원 ○ 참석수당(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역특화사업) · 연 2회 × 4개 사업 × 8명 × 150,000원 = 9,600천원 ○ 심사수당 : 연 2회 × 4개 사업 × 11건 × 8명 × 10,000원(1건) = 7,040천원 ○ 심사자료 인쇄(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역특화사업) · 연 2회 × 4개 사업 × 8명 × 3권 × 40,000원 = 7,680천원	※ 참고 :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충남 공무원 교육원)
	(변경)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수행기업 선정 등 : 47,000천원 ○ 사업설명회(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역특화사업) 연 2회 × 111부 × 12,000원 = 2,664천원 ○ 참석수당(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역특화사업) · 공모 7회 × 6명 × 150,000원 = 6,300천원 ○ 심사수당 : 공모 7회 × 30건 × 6명 × 10,000원 = 12,600천원 ○ 심사자료 인쇄(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역특화사업) · 공모 7회 × 8명 × 5권 × 90,900원 ≒ 25,43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7,000	-	27,000	47,000	20,0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47,000	-	27,000	47,000	2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팀	이민희 (행) 2280	서정범 (행) 3942	차회정 (행) 3973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청년일자리)	정책사업	지역경제 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의 역량있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활동가로 육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52,084천원** 【**기정액 : 602,602천원 + 감 : 150,518천원**】
- ※ 증감 사유 : 행정안전부 2021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
- 사 업 량 : 청년활동가* 28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충남도 거주 청년(실업자,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업시행방법 : 공모 선정된 운영기관(민간단체)
- 사업시행주체 : 나사렛대학교
- 사업 내용 :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회적경제 조직에 청년활동가 역할 교육 후 현장 배치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p>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경영지원 등)</p> <p>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p> <p>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교육훈련 지원 등)</p> <p>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초)</p> <p>■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 732,202천원(국비 366,101 도비 236,501 자부담 129,600)</p> <p>○ 인건비 : 2,000천원 × 27명 × 12개월 = 648,000천원</p> <p>○ 교육비 : 강사수당 등 기타 교육운영비, 기관 운영비 등 84,202천원</p> <p>(변경)</p> <p>■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 529,684천원(국비 264,842 도비 187,242 자부담 77,600)</p> <p>○ 인건비 : 2,000천원 × 28명 × (1~12개월) = 388,000천원</p> <p>○ 기타지원금 : 강사수당 등 기타 교육운영비, 기관 운영비 등 51,684천원</p> <p>○ 인센티브 : 2,500천원 × 16명 × (1~4분기) = 90,000천원</p>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29,684	-	732,202	529,684	△202,518	-	계속
국 비	264,842	-	366,101	264,842	△101,259	-	
도 비	187,242	-	236,501	187,242	△49,259	-	
시군비	-	-	-	-	-	-	
기 타	77,600	-	129,600	77,600	△52,000	-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35%, 기타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862,200	862,2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이민희 (행) 2280	최길락 (행) 3943	전유리 (행) 2283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청년일자리)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여 우리도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및 자생력 강화 도모
- 사업 위치 : 13개 시·군(서천군, 예산군 미참여)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35,928천원** 【**기정액 : 731,682천원 + 감 : 195,754천원**】
- ※ 증감 사유 : 행정안전부 2021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
- 사 업 량 : 청년도제 교육생* 40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충남도 거주 청년(실업자,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업시행방법 : 시군대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시·군(서천군, 예산군 미참여)
- 사업 내용 :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인의 전문기술 전수로 청년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p>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경영지원 등)</p> <p>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p> <p>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교육훈련 지원 등)</p> <p>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초)</p> <p>■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운영 : 1,227,572천원(국비 613,786 도비 117,896 시군비 275,090 기타 220,800) ※기업부담 : 인건비의 20%</p> <p>○ 인건비 : 2,000천원 × 46명 × 12개월 = 1,104,000천원</p> <p>○ 교육비 : 123,572천원 : 강사수당 등 기타 교육운영비 123,572천원</p> <p>(변경)</p> <p>■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 : 884,135천원(국비 442,068 도비 93,860, 시군비 219,008, 자부담 129,200)</p> <p>○ 인건비 : 2,000천원 × 40명 × (1~12개월) = 646,000천원</p> <p>○ 기타지원금 : 강사수당 등 기타 교육운영비, 기관 운영비 등 65,636천원</p> <p>○ 인센티브 : 2,500천원 × 32명 × (1~4분기) = 172,500천원</p>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84,136	-	1,227,572	884,136	△343,436	-	계속
국 비	442,068	-	613,786	442,068	△171,718	-	
도 비	93,860	-	117,896	93,860	△24,036	-	
시군비	219,008	-	275,090	219,008	△56,082	-	
기 타	129,200	-	220,800	129,200	△91,600	-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1%, 시군비 25%, 기타 1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31,682	731,682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이만희 (행) 2280	최길락 (행) 3943	전유리 (행) 2283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

1.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54
2. 청년네트워크 운영	56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59
4.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	61
5.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64
6.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	67
7.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70
8.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성립전) ...	73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정책사업	미리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들의 권리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정책 주요사항 심의·조정 등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15,835천원 【 기정액 : 11,835천원 + 증 : 4,000천원(사무관리비) 】**
- ※ 증가 사유 : 청년정책위원회 확대 개편에 따른 운영비 조정(19명 → 30명, '21. 3월)
- 사 업 량 : 회의(정기·수시) 5회, 역량강화 워크숍 1회, 지역청년과의 네트워킹 2회 개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정기, 수시) 개최 및 역량강화 워크숍, 지역청년 네트워킹 등 추진
- 지원근거 : 청년기본법 제14조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청년기본법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초)</p> <p>■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 7,650천원 ※ 의무절감 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5회(정기 2회, 수시 3회) 운영 = 7,650천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13명(위촉직) × 5회 = 6,500천원 · 회의자료 제작 : 11.5천원 × 20부 × 5회 = 1,150천원 <p>■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행사운영비) : 2,160천원 ※ 의무절감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1회 : 1,500천원 · 행사장 임차비 : 500천원 × 1회 = 500천원 · 외부강사료 및 여비 : 250천원 × 2명 × 1회 = 50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일반강사 2급, 2시간 교육, 교통여비 20천원) · 교육자료 제작 : 16천원 × 25부 = 400천원 · 사무용품 등 구입 : 5천원 × 20명 × 1회 = 100천원 ○ 지역청년과의 네트워킹 2회 : 660천원 · 행사장 임차비 : 330천원 × 2회 = 66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행사실비지원금) : 2,025천원 ※ 의무절감 10% ○ 청년정책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1회 및 지역청년과의 네트워킹 2회 = 2,025천원 · 실비(교통비 등) : 20천원 × 100명(연 인원) ≙ 2,025천원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 11,650천원 ○ 회의 5회(정기 2회, 수시 3회) 운영 = 11,650천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19명(위촉직, 도의원 2인 제외) × 5회 = 9,500천원 · 회의자료 제작 : 11.5천원 × 30부 × 5회 = 1,725천원 · 다과 등 구입 : 85천원 × 5회 = 42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 변동없음 	
--	--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835	-	11,835	15,835	4,000	-	계속
국 비	-	-	-	-	-	-	-
도 비	15,835	-	11,835	15,835	4,000	-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000	6,549	2,451	73%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안연순 (행) 2290	이상의 (행) 3981	연상훈 (행) 3991

청년네트워크 운영	정책사업	미래대응 기반강화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업	청년정책 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09) 기타보상금(301-1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청년중심 거버넌스 구축으로 청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개발과 정보교류, 도정 참여 기회 마련 등 청년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40,035천원 【 기정액 : 30,035천원 + 증 : 10,000원(행사운영비) 】**
- ※ 증액 사유 : 충남청년네트워크 역량강화 및 전국 네트워크 교류회 등 네트워크 사업 추진
- 사 업 량 : 청년네트워크 118명 구성, 발대식 1회, 전체회의 2회, 역량강화교육 1회, 전국 네트워크교류회 1회, 워크숍 1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분과위별 정책 연구 지원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p>제16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협의회와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p>④ 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청년네트워크 운영(사무관리비) : 8,500천원 ※ 의무절감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네트워크 활동 : 8,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네트워크 활동 사례집 : 25천원 × 100부 = 2,500천원 · 전문가 자문수당 : 200천원 × 1명 × 15개 시·군 × 2회 = 6,00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자문수당 지급기준 준용(2시간 심사) ■ 청년네트워크 운영(행사운영비) : 14,985천원 ※ 의무절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네트워크 역량강화 교육 : 8,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강화 교육(자격과정)비 : 88천원 × 100명 = 8,800천원 ○ 청년네트워크 전국 교류회, : 6,18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임차료 : 1,000천원 × 1회 = 1,000천원 · 행사시설(음향장비 등) 임차료 : 1,000천원×1회 = 1,000천원 · 종식비 : 8천원 × 100명 × 1회 = 800천원 · 강사비 : 230천원 × 3명 × 1회 = 69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일반강사 2급, 2시간 교육) · 행사지원인력 인건비 : 100천원 × 3명 × 1회 = 300천원 · 교재 제작비 : 11천원 × 100명 × 1회 = 1,1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 2천원 × 100명 × 1회 = 200천원 · 행사 스케치 영상촬영 및 제작 : 300천원 × 1회 = 300천원 · 행사 운영비 : 795천원 × 1회 = 795천원 ■ 청년네트워크 운영(행사실비지원금) : 4,050천원 ※ 의무절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네트워크 위원 활동비 4,0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교통비 등) : 40.5천원 × 100명 = 4,050천원 ■ 청년네트워크 운영(기타보상금) : 2,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활동 우수작 시상 : 2,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상금 : 300천원 × 5작 + 100천원 × 10작 = 2,500천원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네트워크 운영(행사운영비) : 24,98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네트워크 행사(발대식, 전체회의, 역량강화 교육, 전국네트워크 교류회, 워크숍 등) : 24,98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임차비 : 900천원 × 3회 = 2,700천원 · 대형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 : 165천원 × 3회 = 495천원 · 행사 강사비 : 230천원 × 4명 × 2회 = 1,840천원 *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일반강사 2급, 2시간 교육) · 행사지원 인건비 : 100천원 × 4명 × 3회 = 1,200천원 · 교재 제작비 : 10천원 × 100명 × 2회 = 2,000천원 · 역량강화 교육비 : 88천원 × 100명 = 8,8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 2천원 × 100명 × 3회 = 600천원 · 행사시설(음향장비 등) 임차료 : 1,000천원 × 3회 = 3,000천원 · 행사 스케치 영상촬영 및 제작 : 550천원 × 3회 = 1,650천원 · 행사기타장비(열화상 카메라 등) 임차료 : 900천원 × 3회 = 2,700천원 ■ 청년네트워크 운영(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 변동없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035	-	30,035	40,035	10,000	-	계속
국 비	-	-	-	-	-	-	-
도 비	40,035	-	30,035	40,035	10,000	-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5,800	35,643	20,157	64%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동의
2020년 (2021~2025)	-	-	-	-	-	-	2021. 5월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소통팀	안연순 (행) 2290	한소영 (행) 3983	박정철 (행) 399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군에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발굴·설계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기업·단체 등에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 청년 유출을 막고 청년 고용환경을 개선코자 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18년 하반기~2021년 추진계획
- 예 산 액 : **14,379,828천원 【기정액 : 16,374,835천원 + 감 : 1,995,007천원】**
 ※ 감액 사유 :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21.4.16.)에 따른 예산조정
- 사 업 량 : 60개 사업(계속사업 44 + 신규사업 16), 1,048명 고용창출
- 사업시행방법 : 사업유형 제시(행안부)→지자체 자율적 사업설계→행안부 공모·심사→국비지원→사업시행(시군)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교육비, 취창업 지원비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조 및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

<p>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p> <p>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제12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3. 청년 창업 지원 사업 5. 청년 취업 및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p>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23,432,829천원 ○ 15개 시군, 63개 사업, 1,060명 고용창출 : 23,432,829천원 (국비 11,498,199 도비 4,876,636 시군비 4,876,637 기업부담 2,181,357)	
	(변경)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20,481,037천원 ○ 15개 시군, 60개 사업, 1,048명 고용창출 : 20,481,037천원 (국비 10,205,236 도비 4,174,592 시군비 4,174,593 기업부담 1,926,616) *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 확정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481,037	-	23,432,829	20,481,037	△2,951,792	-	계속
국 비	10,205,236	-	11,498,199	10,205,236	△1,292,963	-	
도 비	4,174,592	-	4,876,636	4,174,592	△702,044	-	
시군비	4,174,593	-	4,876,637	4,174,593	△702,044	-	
기 타	1,926,616	-	2,181,357	1,926,616	△254,741	-	기업부담

* 보조율 : (1·4유형)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기업부담 인건비의 10%
 (2유형)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3유형) 국비 40%, 도비 25%, 시군비 25%, 기업부담 인건비의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6,027,018	16,027,018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이영희 (행) 3994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대학 우수인재의 직접적인 채용지원을 통한 고용활성화 및 지역정착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909,500천원** 【**기정액 : 660,310천원 + 증 : 249,190천원**】
- ※ 증액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20.12.15.)에 따른 예산조정
- 사 업 량 : 31명(기존인원 22명 + 신규인원 9명 일자리 창출)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대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 일자리(2+1년*) 창출 지원
- * 2+1년 : 월200만원 기업 인건비 지원(2년 이내) + 계속고용 시 추가지원(1년, 청년인센티브 1,000만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제9조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취업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 활용 등)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도 소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 704,710천원 (국비 243,855, 도비 416,455, 기업부담 44,400) ○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444,000천원 ※ 국비 50%, 도비 40%, 기업부담 10% · 2,000천원 × 11명(기존인원) × 12개월 = 264,000천원 · 2,000천원 × 10명(신규인원) × 9개월 = 180,000천원 ○ 기타지원금(사업운영비 등) : 43,710천원 ※ 국비 50%, 도비 50% · 전담매니저 인건비 : 3,600천원 × 1명 × 12개월 = 43,710천원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지원비 : 217,000천원 ※ 도비 100% · 수습운영비 : 2,100천원 × 10명 × 1회 = 21,000천원 · 운영비(소모품비) : 100천원 × 8회 = 800천원 · 운영비(간담회) : 800천원 × 3회 = 2,400천원 · 운영비(홍보비) :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 여비 : 40천원 × 월5회 × 12개월 × 1명 = 2,400천원 · 기본교육 운영비 :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 집합교육 운영비 : 24,000천원 × 1식 = 24,000천원 · 교육비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1,000천원 × 21명 = 21,000천원 · 정주여건 개선비 : 364,703원(교통비, 복지포인트 등) × 21명 × 9개월 ≙ 68,929천원 · 위수탁수수료 : 704,710천원 × 10% = 70,471천원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 976,500천원 (국비 373,561, 도비 535,939, 기업부담 67,000) ○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670,000천원 ※ 국비 50%, 도비 40%, 기업부담 10% · 2,000천원 × 8명(기존인원) × 8개월 = 128,000천원 · 2,000천원 × 2명(기존인원) × 10개월 = 40,000천원 · 2,000천원 × 1명(기존인원) × 11개월 = 22,000천원 · 2,000천원 × 11명(기존인원) × 12개월 = 264,000천원 · 2,000천원 × 9명(신규인원) × 12개월 = 216,000천원 ○ 기타지원금(사업운영비 등) : 57,122천원 ※ 국비 50%, 도비 50% · 자기계발비 : 500천원 × 31명 = 15,500천원 · 교육비 등 : 41,622천원 ○ 인센티브 : 20,000천원 ※ 국비 50%, 도비 50% · 10,000천원 × 8명 × 1/4분기 = 20,000천원 ○ 자율지원비 : 229,378천원 ※ 도비 100% · 운영비(소모품비) : 252.8천원 × 10회 = 2,528천원 · 보전비(정주여건 개선비) : 400천원 × 18명 × 12개월 ≙ 86,000천원 · 인건비(전담매니저) : 3,600천원 × 1명 × 12개월 = 43,200천원 · 민간이전(위수탁수수료) : 976,500천원 × 10% = 97,650천원 	
-------	---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76,500	-	704,710	976,500	271,790	-	계속
국 비	373,561	-	243,855	373,561	129,706	-	
도 비	535,939	-	416,455	535,939	119,484	-	
시군비	-	-	-	-	-	-	
기 타	67,000	-	44,400	67,000	22,600	-	기업부담

* 보조율 : 국비 38.2%, 도비 55.0%, 기타 6.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53,800	653,8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한누리 (행) 3993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특성화고교생 대상 지속가능한 직접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3,282,200천원** 【기정액 : 1,973,712천원 + 증 : 1,308,488천원】
- ※ 증액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20.12.15.)에 따른 예산조정
- 사 업 량 : 146명(기존인원 106명 + 신규인원 40명 일자리 창출)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특성화고 졸업생(예정자) 대상, 현장실습 선도기업 등에 정규직 일자리(2+1년*) 창출 지원
- * 2+1년 : 월200만원 기업 인건비 지원(2년 이내) + 계속고용 시 추가지원(1년, 청년인센티브 1,000만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제9조

<p>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제8조(취업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한다.</p> <p>제9조(교육기관 활용 등)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도 소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당초)</p> <p>■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 2,156,112천원 (국비 1,028,056, 도비 945,656, 기업부담 182,400)</p> <p>○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1,824,000천원 * 국비 50%, 도비 40%, 기업부담 10% · 2,000천원 × 76명 × 최대 12개월 = 1,824,000천원</p>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 기타지원금(사업운영비 등) : 232,112천원 ※ 국비 50%, 도비 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매니저 인건비 : 3,600천원 × 1명 × 12개월 = 43,200천원 · 기본교육 운영비 : 7,184,160원 × 1회 = 7,184,160원 · 집합교육 운영비 : 10,000천원 × 1회 = 10,000천원 · 운영비(소모품비) : 130천원 × 10회 = 1,300천원 · 운영비(간담회) : 1,000천원 × 4회 = 4,000천원 · 운영비(홍보비) : 10,000천원 × 1식 = 10,000천원 · 업무추진비 : 310천원 × 10회 = 3,100천원 · 여비 : (40천원 × 월 5회) × 12개월 × 1명 = 2,400천원 · 위수탁수수료 : 2,156,112천원 × 7% = 150,927,840원 <p>○ 자율지원비 : 100,000천원 ※ 도비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 : 50천원 × 76명 × 12회 = 45,600천원 · 자격증 취득 응시료 : 100천원 × 76명 × 2회 = 15,200천원 · 추가교육 운영비 : 39,200천원 × 1회 = 39,200천원 <p>(변경)</p> <p>■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 3,587,000천원 (국비 1,728,675, 도비 1,553,525, 기업부담 304,800)</p> <p>○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3,048,000천원 ※ 국비 50%, 도비 40%, 기업부담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천원 × 22명(기존인원) × 9개월 = 396,000천원 · 2,000천원 × 35명(기존인원) × 9개월 = 630,000천원 · 2,000천원 × 8명(기존인원) × 10개월 = 160,000천원 · 2,000천원 × 41명(기존인원) × 11개월 = 902,000천원 · 2,000천원 × 40명(신규인원) × 12개월 = 960,000천원 <p>○ 기타지원금 : 354,350천원 ※ 국비 50%, 도비 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매니저 인건비 : 3,600천원 × 1명 × 12개월 = 43,200천원 · 운영비(교육) : 50천원 × 146명 = 7,300천원 · 운영비(설명회 및 보고회) : 50천원 × 110개사 : 5,500천원 · 운영비(소모품비) : 188천원 × 10회 = 1,880천원 · 운영비(통신비) : 10천원 × 12회 = 120천원 · 운영비(회계감사비) : 5,250천원 × 1회 = 5,250천원 · 운영비(홍보비) : 6,010천원 × 1회 = 6,010천원 · 운영비(장비렌탈비) : 200천원 × 12회 = 2,400천원 · 운영비(노무사비) : 200천원 × 12회 = 2,400천원 · 보전금(자기계발비) : 200천원 × 146명 = 29,200천원 · 위수탁수수료 : 3,587백만원 × 7% = 251,090천원 <p>○ 인센티브 : 55,000천원 ※ 국비 50%, 도비 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천원 × 22명 × 1/4분기 = 55,000천원 <p>○ 자율지원비 : 129,650천원 ※ 도비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등 : 65천원 × 월8회 × 12개월 × 1명 = 6,240천원 · 보전금 : 50천원 × 146명 × 12회 = 87,600천원 · 운영비(역량강화) : 245천원 × 146명 = 35,81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587,000	-	2,156,112	3,587,000	1,430,888	-	계속
국 비	1,728,675	-	1,028,056	1,728,675	700,619	-	
도 비	1,553,525	-	945,656	1,553,525	607,869	-	
시군비	-	-	-	-	-	-	
기 타	304,800	-	182,400	304,800	122,400	-	기업부담

* 보조율 : 국비 48.2%, 도비 43.3%, 기타 8.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658,000	2,658,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한누리 (행) 3993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경영 기반 안정화 지원
- 사업 위치 : 도내 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졸업 후 3년 이내 기업, 창업 5년 이내 기업)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3,846,350천원** 【**기정액 : 2,863,928천원 + 증 : 982,422천원**】
- ※ 증액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20.12.15.)에 따른 예산조정
- 사 업 량 : 196명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테크노파크
- 사업 내용 :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월 200만원 최대 2년간), 신규직원 워크숍 및 교육·컨설팅 지원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충남 스타트업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 3,142,328천원 (국비 1,571,164천원, 도비 1,292,764천원, 기업부담 278,400천원) ○ 인건비 : 2,784,000천원 ※ 국비 50%, 도비 40%, 기업부담 10% · 기존인원 인건비 2,000천원 × 91명 × 12개월 = 2,184,000천원 · 신규인원 인건비 2,000천원 × 30명 × 10개월 = 600,000천원 ○ 기타지원금 : 358,328천원 ※ 국비 50%, 도비 50% · 운영비 9,000천원 × 12개월 = 108,000천원 · 신규 선발인원 대상 기본교육 : 20,000천원 × 1회=20,000천원 · 채용인원 대상 워크숍 : 15,000천원 × 3회 = 45,000천원 · 수혜기업 CEO 리더쉽 워크숍 : 15,000천원 × 1회 = 15,000천원 · 심화교육 : 4,500천원 × 5회(1회당 24명씩) = 22,500천원 · 지원 채용인원 자기개발지원 = 1,000천원 × 121명 = 121,000천원 · 유관기관 네트워킹 : 1,100천원 × 5회 = 5,500천원 · 관리운영비(소모품구입, 회의비, 여비교통비 등) : 21,328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충남 스타트업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 4,200,750천원 (국비 2,100,375천원, 도비 1,745,975천원, 기업부담 354,400천원) ○ 인건비 : 3,544,000천원 ※ 국비 50%, 도비 40%, 기업부담 10% · 기존인원 인건비 2,000천원 × 83명 × 1식 = 928,000천원 · 기존인원 인건비 2,000천원 × 89명 × 12개월 = 2,136,000천원 · 신규인원 인건비 2,000천원 × 24명 × 10개월 = 480,000천원 ○ 기타지원금 : 441,750천원 ※ 국비 50%, 도비 50% · 유관기관 네트워킹 : 8,104천원 × 13회 = 105,352천원 · 수행기관 위탁수수료 : 4,200,750천원 × 5% = 210,000천원 · 지원 채용인원 자기개발지원 = 800천원 × 113명 = 90,400천원 · 관리운영비(소모품구입, 회의비, 여비교통비 등) : 35,998천원 ○ 기타지원금 : 215,000천원 ※ 국비 50%, 도비 50% · 인센티브1 : 10,000천원 × 17명 × 3/4분기 = 127,500천원 · 인센티브2 : 10,000천원 × 13명 × 2/4분기 = 65,000천원 · 인센티브3 : 10,000천원 × 9명 × 1/4분기 = 22,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200,750	-	3,142,328	4,200,750	1,058,422	-	계속
국 비	2,100,375	-	1,571,164	2,100,375	529,211	-	
도 비	1,745,975	-	1,292,764	1,745,975	453,211	-	
시군비	-	-	-	-	-	-	
기 타	354,400	-	278,400	354,400	76,000	-	기업부담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42%, 기타 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636,400	3,636,4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김희열 (행) 2292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지역에 청년 유입을 지원하여 활력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4,864,800천원** 【**기정액 : 3,880,000천원 + 증 : 984,800천원**】
 - ※ 증액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20.12.15.)에 따른 예산조정
- 사 업 량 : 198명(기존인원 193명 + 신규인원 5명 일자리 창출)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지역기업 등에 정규직 일자리(2+1년*) 창출 지원
 - * 2+1년 : 월200만원 기업 인건비 지원(2년 이내) + 계속고용 시 추가지원(1년, 청년인센티브 1,000만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제9조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취업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 활용 등)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도 소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 4,240,000천원 (국비 2,025,000, 도비 1,855,000, 기업부담 360,000) ○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3,600,000천원 ※ 국비 50%, 도비 40%, 기업부담 10% · 2,000천원 × 200명 × 9개월 = 3,600,000천원 ○ 기타지원금(사업운영비 등) : 450,000천원 ※ 국비 50%, 도비 50% · 전담매니저 인건비 : 3,600천원 × 1명 × 12개월 = 43,200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 40천원 × 월 5회 × 12개월 × 1명 = 2,400천원 · 교통비 지원 : 50천원 × 200명 × 9개월 = 90,000천원 · 운영비(간담회) : 500천원 × 8회 = 4,000천원 · 운영비(홍보비) : 12,000천원 × 1식 = 12,000천원 · 운영비(소모품비) : 160천원 × 10회 = 1,600천원 · 위수탁수수료 : 4,240,000천원 × 7% = 296,800천원 ○ 자율지원비 : 190,000천원 ※ 도비 100% · 기본교육 운영비 : 20,000천원 × 1회 = 20,000천원 · 집합교육 운영비 : 50,000천원 × 1회 = 50,000천원 · 교육비 및 자격증 취득지원 : 600천원 × 200명 = 120,000천원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 5,340,000천원 (국비 2,659,500, 도비 2,205,300, 기업부담 475,200) ○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4,752,000천원 ※ 국비 50%, 도비 40%, 기업부담 10% · 2,000천원 × 198명(기존+신규인원) × 12개월 = 4,752,000천원 ○ 기타지원금 : 567,000천원 ※ 국비 50%, 도비 50% · 전담매니저 인건비 : 3,600천원 × 1명 × 12개월 = 43,200천원 · 여비 : 50천원 × 월 10회 × 12개월 × 1명 = 6,000천원 · 교통비 지원 : 50천원 × 198명 × 12개월 = 118,800천원 · 업무추진비 : 200천원 × 12회 = 2,400천원 · 운영비(장비렌탈비) : 300천원 × 12회 = 3,600천원 · 운영비(e메일 이용료) : 10천원 × 12회 = 120천원 · 운영비(홍보비) : 2,400천원 × 1식 = 2,400천원 · 운영비(소모품비) : 228천원 × 10회 = 2,280천원 · 운영비(노무사비) : 200천원 × 12회 = 2,400천원 · 위수탁수수료 : 5,340,000천원 × 5% = 267,000천원 · 자기계발비 : 600천원 × 198명 = 118,800천원 ○ 자율지원비 : 21,000천원 ※ 도비 100% · 운영비(회계감사비) :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 사업보고회 : 30천원 × 200명 = 6,000천원 · 교육운영비 : 50천원 × 198명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340,000	-	4,240,000	5,340,000	1,100,000	-	계속
국 비	2,659,500	-	2,025,000	2,659,500	634,500	-	
도 비	2,205,300	-	1,855,000	2,205,300	350,300	-	
시군비	-	-	-	-	-	-	
기 타	475,200	-	360,000	475,200	115,200	-	기업부담

* 보조율 : 국비 49.8%, 도비 41.3%, 기타 8.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880,000	3,88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한누리 (행) 3993

충남형 디지털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성립전)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분야 교육·훈련 및 일 경험 제공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예 산 액 : **2,370,000천원** 【**기정액 : 0천원 + 증 : 2,370,000천원**】
- ※ 증액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20.12.15.)에 따른 예산반영
- 사 업 량 : 100명(신규인원 100명 일자리 창출)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디지털·비대면 분야 지역기업 등에 일자리* 창출 지원
* 월200만원 기업 인건비 지원(10개월)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제9조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취업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 활용 등)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도 소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미편성 (변경) ■ 충남형 디지털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 : 2,370,000천원 (국비 1,125,000, 도비 1,245,000) ○ 인건비 : 2,000,000천원 ※ 국비 50%, 도비 50% · 2,000천원 × 100명(신규인원) × 10개월 = 2,000,000천원 ○ 기타지원금 : 250,000천원 ※ 국비 50%, 도비 50% · 기본교육 및 설명회 : 60천원 × 100명 × 1회 = 6,000천원 · 심화교육 : 300천원 × 100명 × 1회 = 30,000천원 · 직무 컨설팅 : 100백만원 × 100명 × 4회 = 4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노무사비) : 200백만원 × 10회 = 2,000천원 · 운영비(장비렌탈비) : 200백만원 × 10회 = 2,000천원 · 운영비(소모품비) : 210천원 × 10회 = 2,100천원 · 업무추진비 : 200천원 × 10회 = 2,000천원 · 위수탁 수수료 : 2,370,000천원 × 7% = 165,900천원 ○ 자율지원 : 120,000천원 ※ 도비 100% · 자기계발비 : 250천원 × 100명 × 2회 = 50,000천원 · 교통비 : 50천원 × 100명 × 10회 = 50,000천원 · 홍보비 : 5,000천원 × 2회 = 10,000천원 · 운영비(회계감사비) : 4,000천원 × 1회 = 4,000천원 · 여비 : 50천원 × 10회 × 1명 × 12개월 = 6,000천원 	
--	--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370,000	-	-	2,370,000	2,370,000	-	신규
국 비	1,125,000	-	-	1,125,000	1,125,000	-	
도 비	1,245,000	-	-	1,245,000	1,245,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47.5%, 도비 5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	안연순 (행) 2290	이혁세 (행) 3982	한누리 (행) 3993